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-124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5. 9. .

제 출 자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구민 대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추가하고 사용료 부과기준 정비 및 보완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추가(안 제3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및 띄어쓰기 정비
- [별표]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 추가(안 제9조제2항 관련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-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5. 9. 4. ~ 9. 24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운영업무”를 “운영 업무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구청사 1층·지하”를 “1층·지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구청사 4층”을 “4층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구민 광장

6. 햇빛 광장

7. 구내 식당

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(제9조제2항 관련)

구분	사용료	내용	비고
1층·지하 1층 로비	무료	▫ 평일 09:00~18:00 이용	1. 1회 이용시간 초과 사용 시 시간 단위 별 일할 계산 (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)
2층 대강당	300,000원/회	▫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▫ 평일 09:00~21:00 이용 ▫ 토요일·공휴일 09:00~18:00 이용	2.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
4층 시청각실	100,000원/회	※ 냉·난방 가동 시 사용료에 냉·난방비 가산	3. 사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
구민광장	150,000원/회	▫ 1일 이용시간은 10시간 이내 ▫ 평일·토요일·공휴일 09:00~19:00 이용	4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주차료 징수
햇빛광장			
구내식당	100,000원/회	▫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▫ 토요일·공휴일 08:00~19:00 이용	5.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
냉·난방비	20,000원/시간 (대강당)	▫ 냉·난방 적용기간 - 냉방 : 6월~9월 - 난방 : 12월~2월	※ 기온고려 냉·난방가동 시간 변동
	10,000원/시간 (시청각실)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<u>운영업무</u>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운영</u> <u>업무</u> ----- ----- -----.
제3조(사용허가 대상 시설물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사용허가 대상 시설물) ① ----- -----.
1. <u>구청사 1층·지하 1층</u> 로비	1. <u>1층·지하</u>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<u>구청사 4층</u> 시청각실	3. <u>4층</u> -----
4. 삭 제	
< <u>신 설</u> >	5. <u>구민 광장</u>
< <u>신 설</u> >	6. <u>햇빛 광장</u>
< <u>신 설</u> >	7. <u>구내 식당</u>
5. (생략)	8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[별표]

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 (제9조제2항 관련)

구분	사용료	내용	비고
구청사 1층 · 지하 1층 로비	무료	▫ 평일 9:00~18:00 이용	1. 1회 이용시간 초과 사용 시 시간 단위별 일 할 계산 (초과 시간이 1 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 간으로 간주)
2층 대강당	300,000원/회		2. 토요일 및 공휴 일은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 함
구청사 4층 시청각실	100,000원/회	▫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▫ 평일 9:00~21:00 이용 ▫ 토요일·공휴일 9:00~ 18:00 이용 ※ 냉·난방 가동 시 사 용료에 냉·난방비 가 산	3. 사전 행사준비 를 위한 사용 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4. 부설주차장 관 리 규정에 따 라 주차료 징 수 5.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
냉·난방비	20,000원/시 간 10,000원/시 간	▫ 냉·난방 적용기간 - 냉방 : 6월 ~ 9월 - 난방 : 12월 ~ 2월	※ 기온고려 냉·난방가동 시간 변 동

[별표]

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 (제9조제2항 관련)

구분	사용료	내용	비고
1층·지하 1층 로비	무료	▫ 평일 09:00~18:00 이용	1. 1회 이용시간 초과 사용 시 시간 단위별 일할 계산 (초과 시간이 1 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 간으로 간주)
2층 대강당	300,000원/회	▫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▫ 평일 09:00~21:00 이용 ▫ 토요일·공휴일 09:00~ 18:00 이용 ※ 냉·난방 가동 시 사 용료에 냉·난방비 가산	2. 토요일 및 공 휴일은 사용료 의 30퍼센트를 가산함
4층 시청각실	100,000원/회		3. 사전 행사준비 를 위한 사용 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
구민광장	150,000원/ 회	▫ 1일 이용시간은 10시간 이내 ▫ 평일·토요일·공휴일 09:00~19:00 이용	4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 리 조례」, 「서울 특별 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 리 조례 시행 규칙」에 따라 주차료 징수
구내식당	100,000원/ 회	▫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▫ 토요일·공휴일 08:00~19:00 이용	5.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
냉·난방비	20,000원/시 간 (대강당) 10,000원/시 간 (시청각실)	▫ 냉·난방 적용기간 - 냉방 : 6월 ~ 9월 - 난방 : 12월 ~ 2월	※ 기온고려 냉·난방가동 시간 변동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추계대상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김도희
연 락 처	02-3153-8232